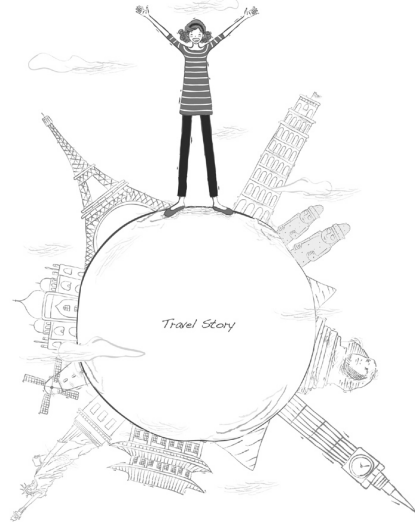




전문가와 직업윤리

안세회계법인 이사

고 영 일



1월부터 3월까지의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들이 감사시즌에 돌입해서 그야말로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쁜 시기이다. 연수입액의 대부분이 이 시기에 발생한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관련 보도가 비중 있게 보도되고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다.

그 중 하나는 금융당국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는 한계기업 관계자나 투자자 등에 의한 외부감사인 협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는 기사이다. 감사의견 ‘의견거절’은 중시 퇴출사유에 해당하고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기 때문에 위협과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감사의견 변경을 요구한다. 회계법인 업체는 협박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감사업무를 기업으로부터 수주받는 특성상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아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왔는데 사태가 더 심각해질 수 있고 감사인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으로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각 회계법인에 CCTV 설치 등을 통해 증거 수집에 나설 예정이란 내용이다.



또 하나의 기사는 모 대형 회계법인이 비상장주식 가치를 과대평가하여 이를 기반으로 투자한 투자자들이 무상소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주식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했다면 원고들이 실권주 공모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는 내용이다.

마지막 기사는 코스닥 상장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상장폐지될 위기에 처하자 대주주로부터 돈을 받은 공인회계사들이 다양한 분식회계 수법을 만들고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3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주도했고 감사의견 ‘의견거절’ 이라고 표명했던 감사보고서도 감사의견 ‘한정의견’ 으로 유리하게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대다수 일반인들은 관련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들에만 초점을 두어 비난하기 쉽다. 그러나 이들 사건의 배경에는 불편한 진실이 존재하고 있다. 먼저 이들 사건과 관련된 회계 및 감사관련 규정과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면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서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가 자신을 감사할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선정하여 다른 용역계약처럼 감사계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75조에 의하면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감사인의 반기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 잠식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주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 규정 제80조에 의하면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최근 사업연도에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권상장법인이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최근 사업연도에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 잠식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권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 잠식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주권의 상장을 폐지토록 하고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에 의하면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이 있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및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 규정 38조에 의하면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이 있는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에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이 있는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 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또는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및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법인이 최근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및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법인이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기업의 상장을 폐지토록 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계감사기준 700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적정의견을 표명하도록 하고 있고, 감사인과 경영자간의 의견 불일치나 감사범위의 제한에 따른 영향이 중요하므로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부적정의견을 표명하거나 감사의견 표명을 거절하여야 할 정도로 중요하지 않거나 전반적이지 않은 경우 감사인은 한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하며, 감사인과 경영자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한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한정의견으로는 재무제표의 오도나 불완전성을 나타내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감사인은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범위 제한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획득할 수 없었고 따라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할 수 없는 경우 감사의견 표명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 실무의견서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인 평가모형과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신뢰성 있게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즉 평가대상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후의 평가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 평가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평가대상기업을 둘러싼 경제여건, 해당 산업 동향 등에 관한 비재무적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평가모형의 투입변수로서 활용되는 회계 및 재무자료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치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과거기간의 재무정보, 추정재무제표를 비롯한 예측정보, 소속 산업의 재무정보 등을 분석하며 분석된 정보를 바탕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치평가접근법인 이익접근법, 시장접근법, 자산접근법중 회사의 특성에 맞는 가치평가접근법과 평가방법을 선택·적용한다. 시장접근법은 유사한 유가증권과의 비교를 통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치평가접근법이다. 시장접근법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평가방법은 유사기업 이용법, 유사거래이용법, 과거거래이용법이다. 가치평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시장배수는 주가이익비율(PER), 주가장부가치비율(PBR), 주가매출액비율(PSR), 주가현금흐름비율(PCR) 등이다. 이익접근법은 평가대상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효익을 평가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치평가접근법이다. 미래 기대효익은 화폐액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이익 또는 현금흐름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익접근법에는 이익(현금흐름)자본화법, 현금흐름할인법(또는 배당할인법), 경제적부가가치법, 초과이익할인법, 옵션평가모형 등이 있다. 자산접근법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가치를 이용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치평가접근법이다. 자산접근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차대조표상 모든 자산·부채는 가치평가기준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치평가접근법 및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가치추정치를 결정한 후 이들 가치추정치를 기초로 최종가치를 산출하여야 한다. 각 가치추정치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평가하여 하나의 가치평가접근법과 평가방법의 결과만을 활용할 것인지 또는 여러 가치평가접근법이나 평가방법의 결과를 종합하여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최종가치를 산출함에 있어서 적절한 방법의 선택 및 각 방법에 대한 의존정도는 평가자의 전문가적 판단에 기초하여야 하며 정해진 공식 등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결정하여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다.

이상에서 소개한 규정과 제도를 관통하는 사상과 개념은 감사인과 피감사인의 사적 자치, 감사의견 및 가치평가 결과물의 공공성, 공인회계사의 독립성과 윤리이다. 그러나 이런 사상과 개념은 우리가 오랜 세월을 걸쳐 직접 축적해 온 것이 아니라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제도와 관습을 모방한 것이어서 우리 현실과 부조화하고 괴리가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

회계감사의 자유수임제 전환의 결과 대형 회계법인의 독과점이 심화됐다. 2008년의 경우 상위 4대 회계법인의 매출액은 전체 104개 회계법인 총매출액의 57.8%에 달한다. 이같은 독과점 구조로 인해 중소 회계법인들은 생존을 위해 부실기업에 대한 감사도 무리하게 수주할 수밖에 없고 회계감사시 독립성과 공정성에 입각하기 보다는 감사대상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요구에 맞추는 부실감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다. 또한 상위 대형 회계법인들조차도 회계감사업체를 결정하고 회계감사 수수료를 지급하는 감사대상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지정수임제 시절에는 감사를 나가면 사장이하 임직원들이 회사 현관에서 대기하고 감사가 끝나면 배웅을 받곤 했는데 지금은 담당이사 얼굴조차 보기 힘들다는 선배 회계사들의 푸념은 변화된 감사환경을 웅변한다.

공인회계사법에 의하면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하고 공인회계사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그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외부 회계감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해마다 1000명이 넘는 회계사들이 시험에 합격하여 그 중 반 이상이 회계법인에서 제대로 수습을 받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고 중소 회계법인과 단독 개업 회계사들은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위험과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수주에 내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어떻게든지 수입을 해서 신문·방송에 위법 회계사로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는 어느 회계사의 한숨 섞인 씁쓸한 농담과 실업급여를 받는 회계사들도 있다는 사실이 공인회계사업계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회계감사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 가치평가보고서 등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대부분의 업무 산출물들은 이해관계자가 불특정 다수인 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공인회계사의 영문 명칭은 Certified Public Accountant이다. 공적이란 의미의 Certified와 Public이 중첩되어 있다. 그만큼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적으로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이다. 공공재는 사유재의 수요와 공급의 시장 논리와 수익자부담원칙이 아닌 공공재 고유의 법칙에 따라 공급된다. 공인회계사가 자본주의 파수꾼으로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고 독립성을 확립하며 전문가적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서는 기본적인 생계 기반은 구축되어야 한다. 이 말이 회계사집단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의미는 아니다. 공인회계사의 직무가 공공성을 띠고 있으므로 다른 전문서비스 영역처럼 전문가 일인당 국민 몇 명 식의 기준으로 전문가 배출을 많이 시키면 경쟁이 이루어져 문턱도 낮아지고 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는 논리는 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상당부분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기사에서 보았듯이 회계법인의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나 회계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투자한 선의의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자본시장이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을 믿지 못하면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개별적으로 공인회계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인회계사제도는 붕괴될 것이다.

사건에 연루된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식의 일회성 제재 조치나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을 강조하여 부르짖는 도덕교육으로는 부실감사, 분식회계 사태 등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 공인회계사가 부실감사 등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성장,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한 본연의 공적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현재의 외부감사제도 및 공인회계사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개선하고 공인회계사의 신분적·경제적인 터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

